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2022.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 출 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8.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계 홍

#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성진 (동의대학교 교수)

김송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 감대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허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임주왕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목 차


제1장 서 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Ⅱ. 연구의 목적 ····· 2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1. 주요 연구내용 ····· 3

2. 연구방법 ····· 5

3. 국내 관련 연구 동향(연구배경) ····· 6

Ⅳ.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7

1. 기대효과 ····· 7

2. 활용방안 ····· 7

제2장 자치법규 일반론 ····· 9

Ⅰ. 지방자치 개관 ····· 9

Ⅱ.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 11

Ⅲ. 자치입법권 ····· 12

1. 자치입법 개관 ····· 12

2. 조례 입법과정 ····· 15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 ····· 17

Ⅰ.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현황 ····· 17

Ⅱ.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 18

제4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21

Ⅰ.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도입 논의 ····· 21

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제정 연혁 ····· 22

Ⅲ.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와의 비교 분석 ····· 25
1. 비교 분석 개관 ····· 25
2.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주체 및 평가기간 비교 ····· 27
3.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대상 조례 및 위원회 설치 여부 ····· 28
4.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여부 ····· 32
Ⅳ.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필요성 검토 ····· 37

**제5장 개별 조례 정비 사례** ····· 39
Ⅰ. 자치법규정비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개관 ····· 39
Ⅱ.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사례 ····· 51
1. 상위법 인용 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 51
2. 비문, 오탈자 정비 ····· 53
3. 약칭 방식 등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54
Ⅲ. 동일 규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 55
Ⅳ. 상위법령 관련 정비 사례 ····· 55
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사례 ····· 57

**제6장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입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59
1. 조례정비 기준 정립 및 교육 ····· 59
2. 조례정비 백서 발간 ····· 59
3. 조례 성과 및 계획 관련 의회 보고 의무화 ····· 60
4. 입법평가 결과 축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 60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목록** ····· 62

**【별책 1】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 위원회별 소관 조례 -**

# 제 1 장 서 론

##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2년 8월 4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장하는 조례의 수를 살펴보면 769건(본청 621건, 교육청 148건)에 달하는 실정임.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해마다 지방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 건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행정수요의 다변화, 시민들의 참여의식 확대, 활발한 입법 활동 등으로 조례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증가하는 조례 발의 건수에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재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특히,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의 도입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광주광역시, 2014년 경기도의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 이래, 2021년 12월 현재 49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3곳 포함)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도입 움직임에 합류하여 2021. 9. 2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이에 따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8조에 따라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Ⅱ.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교육청 조례 포함)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148건)를 대상으로 입법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실효성・적합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본 용역의 연구수행과 성과품 생산이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또는 조항 신설 등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타당성과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주요 연구내용

### (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상임위별·분야별 자치조례 및 법령위임조례 분류 및 분석

- 자치조례와 법령위임조례의 구분 기준 제시

- 법령위임조례로 분류할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및 내용과 조례의 위임내용 명시

- 자치사무와 법령위임사무가 혼재된 조례의 성격 및 입법평가 필요성

○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 발주기관의 내부 검토에 의해 제안된 입법평가 대상(과업대상) 조례를 입법평가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교육청 조례 포함)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148건)를 대상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문제점 진단

- 현황 분석에 기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

-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발전방안 등

### (2) 2022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 과업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안전 등 4개 분야별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의 평가기준 및 관련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른 입법평가 실시

| * 조례 입법평가 기준(조례 제4조) | |
|---|---|
| ①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 ②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
| ③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 ④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
| ⑤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여부 | |

○ 개별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체계·적법성 평가 : 조례입안기준 등의 부합성 여부

○ 개별 평가대상 조례의 기초자료 분석, 입법평가 기준 및 심사기준표에 기반한 조례의 실효성, 적정성 등 평가

※ 기초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는 발주기관 또는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

○ 개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평가의견 제시 및 평가자료 작성

### (3) 평가대상 조례의 개선방안 도출

○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의견 제시 : 적정, 개정, 폐지, 기타(이행권고 등)

○ 평가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 제시 : 개정안, 이행권고 대상 등

**〈조례 입법평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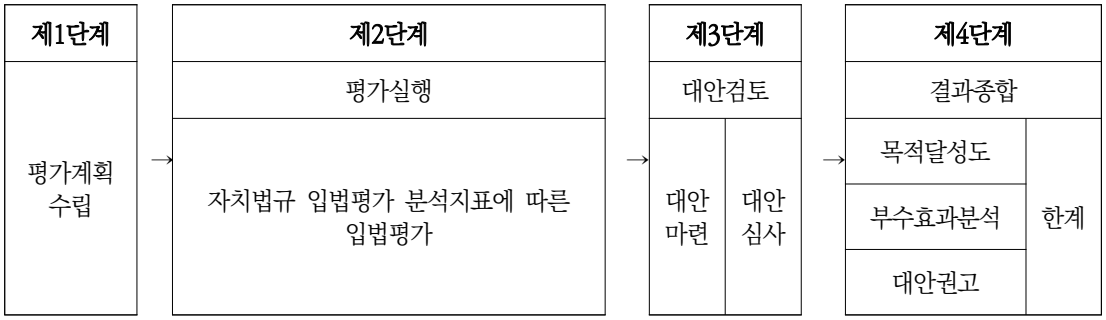


- 위의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실제 조례 입법평가 모형을 참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개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

### (4) 세종특별자치시 실정에 적합한 입법모델(안) 마련

○ 조례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통폐합 방안 분석

- 주요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 조사·분석 결과 조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모델안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사무 관련 조례 분야 분석

-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분야 분석

- 신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분야 제시 및 관련 입법 모델(안) 제시

### (6)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대응

○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안건 준비 및 심의 대응

○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최종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토·확인을 거쳐 최종 성과품을 제출함

##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원내 분야별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 강화 및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실무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등을 통한 신뢰 있는 연구결과 도출 예정

○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 강화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개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 및 현황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함

-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정책 및 현황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운영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실에 적합한 조례정비 연구 결과를 도출

○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 실시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보고서, 관련기관 및 세미나자료, 외국 전문기관의 자료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최신의 자료를 수집·활용

○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

- 담당 분야별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 연구진이 내용을 공유하여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및 보고서 반영

## 3. 국내 관련 연구 동향(연구배경)

○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규모가 큰 지방의회의 경우 연간 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약 400여건 이상이 되는 등 조례의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재검토의 필요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조례 입법평가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등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도 꾸준히 도입이 증가하여 2022년 8월 현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7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4곳 포함)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 전수에 대한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6년 이후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조례 입법평가의 선제적 도입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용되어 왔음. 이와 같은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입법평가 시행 및 성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것임

# Ⅳ.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기대효과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로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개별 조례 정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2. 활용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개정, 폐지 또는 조항 신설 등 조례 정비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2022. 4. 20. 기준으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전수(148건)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조례 정비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제 2 장 자치법규 일반론

## Ⅰ. 지방자치 개관

○ 1991년 지방의회 구성 및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실질적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후 30여년 이상이 지났음.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마련,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원적 분산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치 및 수요의 다원화 추세에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음[1)]

-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 지방자치란 지방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아 주민의 공동관심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의 책 임하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을 결정・처리하게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말함.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역사를 보면 일찍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민주주의의 실질을 경험적으로 익히고 체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임

- 지방자치의 경제적 가치: 1960년대 이후 거시적 관점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의 성장을 확대하도록 하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지방자치의 행정적 가치: ⅰ) 종합행정의 확보, 즉 기능별・목적별 행정기능을 지역단위에서 종합할 수 있게 해주고, ⅱ) 지역의 특성, 주민의 요구, 주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현실적합적・경제적 행정을 가능케 해주며, ⅲ)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하고, 이는 곧 지방자치의 질적・양적 확대를 가져오며, ⅳ) 행정기능의 적절한 지방 분산과 자치적 처리는 중앙정부의 과중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C 지방자치 발전과제, 1999년, 1면.

○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중에는 성질상 중앙정부가 맡아서 제공해야 할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처리해야 할 서비스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시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온갖 경제적 손실과 주민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방의 실정에 맡도록 검토・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중앙의 정책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그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발현될 것임

○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됨.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며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됨[2)]

○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지방의 정치・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에서 지방자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하급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함. 반면에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공공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함

- 헌법, 법률이 사무를 국가와 기타 공동단체의 사무로 유보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모근 사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전권한성이라 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정한 개별적・구체적 지사나 감독 외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이를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3)]

2)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지방자치”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370&cid=43667&categoryId=43667 (2021년 12월 1일 접근)

3) 강기홍,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5면.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가짐. 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나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읍장・면장・동장・하부행정기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안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권한성을 그 기초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조직자치권, 인사자치권, 계획자치권, 재정자치권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4)]

## Ⅱ.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등으로 구성됨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권한, 사무감독권 등을 가짐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 할 수 있음

○ 현대 행정의 기증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함[5)]

4) 오준근,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2015, 지방자치법학회 발표자료집, 44면.
5)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14, 6면.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됨.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함.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임[6]

○ 지방의회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만들고 고치며,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함. 또한 지방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치입법권의 행사라고 할 것임.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봄

# Ⅲ. 자치입법권[7]

## 1. 자치입법 개관

### (1) 조례 입법 개관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책임아래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권”이라 하며, 지방자치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자치입법권”이라고 함[8]

○ 자치입법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음.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율이 가능함(「지방자치법」 제22조)[9]

---

6)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14, 7면.
7)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참조
8)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3, 7면.
9) 2021. 1. 13. 시행예정인「지방자치법」제28조 참고.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 조례는 형식적으로 법령의 하위에 있으며, 그 지역에 있는 주민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적・인적 한계를 가짐[10] 이와 관련하여 2022. 1. 13.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음

○ 조례안은 구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2022. 1. 13. 시행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현행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 구 「지방자치법」 | 현행 「지방자치법」 |
|---|---|
|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br>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br>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br>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br>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br>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br>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10)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10면.

- 자치입법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음

| 구 분 | 조례의 종류 | |
|---|---|---|
| 법령의 위임 여부 | 위임조례 | 자치조례 |
| 조례제정의 재량여부 | 필수조례 | 임의조례 |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2020, 12면을 바탕으로 표로 구성

## (2) 조례 발의 과정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됨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부여의 근거로 작동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은 헌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임

## 2. 조례 입법과정

○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이 청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수 있음

○ 아래표와 같이 조례 입법 과정 예시를 들 수 있음

# 제 3 장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

## Ⅰ.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현황

○ 2022년 8월 4일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는 총 769건(본청 621건, 교육청 148건)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교육청 조례 포함)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함. 금번 연구용역의 대상이 되는 조례의 총 수는 148건임

○ 제3대의회[11]의 의안통계를 살펴보면 조례안 840건이 접수되었으며 가결된 건수는 813건이며 이 중 62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19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제3대의회 의안 통계〉

| 구분 | | 접수 | 처리내용 | | | | | | 계류 |
|---|---|---|---|---|---|---|---|---|---|
| | | | 가결 | | | 부결 | 폐기 | 철회 | |
| | | | 소계 | 원안 | 수정 | | | | |
| 합계 | | 1381 | 1338 | 1105 | 233 | 1 | 30 | 12 | 0 |
| 조례안 | 소계 | 840 | 813 | 621 | 192 | 0 | 21 | 6 | 0 |
| | 의원 | 467 | 451 | 321 | 130 | 0 | 11 | 5 | 0 |
| | 시장 | 303 | 293 | 238 | 55 | 0 | 9 | 1 | 0 |
| | 교육감 | 52 | 51 | 44 | 7 | 0 | 1 | 0 | 0 |
| | 위원회 | 18 | 18 | 18 | 0 | 0 | 0 | 0 | 0 |
| 예산안 | | 53 | 53 | 23 | 30 | 0 | 0 | 0 | 0 |
| 결산안 | | 28 | 22 | 22 | 0 | 0 | 6 | 0 | 0 |
| 동의안 | | 256 | 248 | 241 | 7 | 0 | 2 | 6 | 0 |
| 승인안 | | 20 | 20 | 20 | 0 | 0 | 0 | 0 | 0 |
| 결의안 | | 35 | 34 | 32 | 2 | 0 | 1 | 0 | 0 |
| 건의안(성명서) | | 5 | 5 | 5 | 0 | 0 | 0 | 0 | 0 |
| 의견청취안 | | 27 | 27 | 27 | 0 | 0 | 0 | 0 | 0 |
| 규칙안 | | 15 | 15 | 13 | 2 | 0 | 0 | 0 | 0 |
| 재의요구안 | | 2 | 1 | 1 | 0 | 1 | 0 | 0 | 0 |
| 기타안건 | | 100 | 100 | 100 | 0 | 0 | 0 | 0 | 0 |

11) 제3대의회는 2022년 상반기까지 활동하였음.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제4대 의회가 공식 출범되었음.

# Ⅱ.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문제점

-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한 정비를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함.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1) 일반적인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① 약칭정비, ②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주술관계정비, 비문 등 어문적 정비, ③ 상위법 인용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④ 조문 간소화 등 조례 입법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비, ⑤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조례 목적 정비, 2) 동일 규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3)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 4)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5) 실효성이 없어 폐지가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됨

- 연구용역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제시함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문제점>**

| 분 류 | 내 용 |
|---|---|
| **일반적인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주술관계정비, 비문 등 어문적 정비<br>상위법 인용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br>조문 간소화 등 조례 입법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비<br>자치조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례 목적조항 정비 |
| **동일 규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조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통일성 확보 필요<br>위원회 참석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마다 다르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규정의 통일성 확보 필요 |
| **상위법령 관련 정비**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br>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br>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도모가 필요한 경우<br>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이 없는 경우<br>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적합하게 비상설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폐지가 필요한 경우** | 조례의 내용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

○ 중·장기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위임을 근거로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는 위원회 등 다양한 유형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함. 이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위원회 운영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선별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하거나 통합하여 운영(대행)하는 방안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례의 통합과 관련하여 매년 많은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는 지방자치입법 현실 속에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가급적 새로운 조례의 제정의 형식이 아니라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현실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여 실효성 없는 조례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규칙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 집행부가 규칙을 제정·운영하여야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통하여 규칙을 제정·운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임

# 제 4 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Ⅰ.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도입 논의

○ 전국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동안 발의주체별 조례안 발의의 경우 시·도의원 발의는 1490건(77.91%), 시·도지사 발의는 458건(22.13%), 교육감 발의는 122건(5.89%)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유일하게 시·도의원 발의만 13.83%p 증가함. 또한 17개 시·도의회 평균 의원발의 건수는 87.65건으로, 의원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261건을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임[12)]

○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1.8건으로, 2018년 하반기 1.0건 대비 0.8건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높은 의회는 의원 1인당 3.5건을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로 2018년 하반기 대비 2.2건이 증가함

○ 2019년 상반기 동안 17개 시·도의회는 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중 총 1969건을 처리하여, 2018년 상반기에 비해 5%p 증가한 95%의 처리율을 보였음. 2019년 상반기 동안 17개 시·도의회는 평균 115.82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가장 많은 조례안을 처리한 의회는 321건을 처리한 서울특별시의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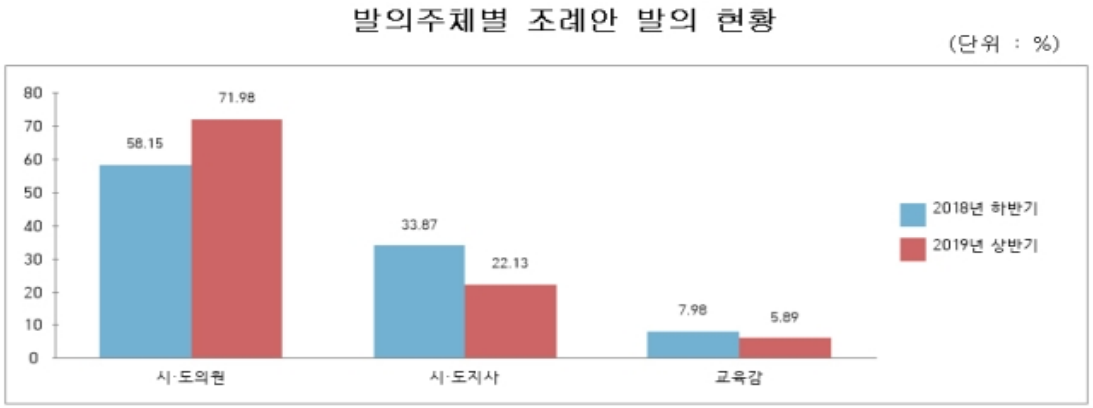


**[그림: 발의주체별 조례안 발의 현황]**

12) 서울신문, “전국 17개 시·도의회 2019년 상반기 조례안, 2018년 하반기 대비 144.86% 증가” 2019.11.12. 일자.

○ 지방의회의 조례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 및 활성화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임.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조례 입법평가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례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있으며,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2015년 5월 6일 시행됨.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1791호)를 2021년 9월 24일에 제정함

○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증가되어 온 제·개정 조례안 발의 건수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 등에서 입법평가 조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제정 연혁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시행 2022.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91호, 2021년 9월 24일 제정]의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동 조례는 제정 후 개정은 아직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구성>**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시장,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별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조례 제3조제1항)

- 평가대상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하며,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동 조례 제3조제2항)

-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동 조례 제5조, 제8조)

- 위원회는 입법평가,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함(동 조례 제6조)

-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입법평가 결과를 시장,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동 조례 제10조제1항)

- 입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동 조례 제10조제2항)

○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조례의 제정 연혁을 아래 표에서 간단히 살펴봄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조례 제정 연혁>

| 제정 연월일 | 제정 이유 |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br>**입법평가 조례**<br>[시[시행 2022. 1. 1.]<br>[세종특별자치시조례<br>제1791호, 2021. 9. 24., 제정] |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입법평가 조례의 제정 후 아직 개정 연혁은 없음

# Ⅲ.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와의 비교 분석[13)]

## 1. 비교 분석 개관

○ 광역자치단체 9곳과 광역교육청 3곳이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임(가나다순).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9곳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곳은 “입법평가”라는 용어를 제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으로 용어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도입・시행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을 가장 먼저 준비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의회)임[14)]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078호)를 2014년 제정, 2015.1.1., 2018.1.1., 2019.1.9. 3회 개정하였음

13) 차현숙,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1, 한국법제연구원, 2015.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함

14)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경기도조례 제4677호)」를 2014년 제정하여 제정시기로는 두 번째이나 처음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여 가장 먼저 추진한 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37호)를 2015년 8월 제정, 2016.12.30., 2018.2.28, 2019.12.31, 2020.7.15. 4회 개정하였음

○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2019.12.26. 조례 제정 후 시행 전 준비를 위하여 2020.7.9. 개정하여 2021.7.1. 시행함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2020.5.29. 제정하여 2021.1.1. 시행함

○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0.7.1.에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명칭과 제정연월일 및 시행일은 아래 표와 같음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명칭 및 제정연월일 비교>**

| 연 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제정연월일 | 최종개정일 | 시행일 |
|---|---|---|---|---|---|
| 1 | 강원도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 2020. 5. 29. | | 2021. 1. 1. |
| 2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 2013. 7. 1 | | 2013. 7. 1 |
| 3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2018. 4. 20. | | 2018. 4. 20. |
| 4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2020. 6. 30. | | 2020. 7. 1. |
| 5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 2020. 1. 8. | | 2020. 7. 9. |
| 6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2014. 11. 5. | 2019. 1. 9. | 2019. 1. 9. |
| 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2019. 12. 26. | 2020. 7. 9. | 2021. 7. 1. |
| 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2015. 8. 18. | 2022. 3. 4. | 2022. 3. 4. |
| 9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2019. 10. 30, | 2021. 4. 30. | 2021. 4. 30. |
| 10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 2021. 12. 23. | | 2022. 6. 20. |
| 11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2021. 4. 8. | | 2021. 7. 9. |
| 12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 2021.9.24 | | 2022.1.1. |
| 13 | 경기도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2014. 1. 10. | 2019. 6. 18. | 2019. 6. 18. |
| 14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2021. 11. 8. | | 2022. 5. 9. |

## 2.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주체 및 평가기간 비교

○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주체는 집행부인 경우와 지방의회인 경우로 나뉘는데,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함. 다만, 교육청 4곳의 경우 교육감이 주체임

○ 평가기간의 경우 2년~4년 사이로 나타나고 있음. 광주광역시는 2년 마다 시행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사후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개정안 마련에 환류할 수 있도록 과정을 정치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평가 결과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주체 및 평가기간 등 비교>**

| 연 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주 체 | 평가기간 | 사후평가유무 |
|---|---|---|---|---|---|
| 1 | 강원도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의회 | 2년 | o |
| 2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 시장 | 2년 | o |
| 3 | 대전광역시 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교육감 | 2년 |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입법평가”를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법규에 대해 필요성, 유효성, 실효성, 체계성, 적법성 등의 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자치법규의 입법효과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후평가로 보임 |
| 4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시장 | 3년 |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법평가”를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평가로 보임 |
| 5 |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 교육감 | 3년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평가”를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후평가로 보임 |

| 연 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주 체 | 평가기간 | 사후평가유무 |
|---|---|---|---|---|---|
| 6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시장 | 3년 |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법평가”를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후평가로 보임 |
| 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의회 (입법평가 위원회) | 2년 |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법평가”를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사후평가로 보임 |
| 8 | 제주특별 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의회 (입법평가 위원회) | 4년 | o |
| 9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의회 | 정기적으로 실시 | o |
| 10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 의회 | 3년마다 | o |
| 11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교육감 | 2년마다 | o |
| 12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의회 | 2년 | o |
| 13 | 경기도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의회 | 4년 | o(사전평가도 실시함) |
| 14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교육감 | 2년 | o |

## 3.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대상 조례 및 위원회 설치 여부

○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N년이 경과한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이와 같은 조례의 경우 특별히 조례 입법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판단이 필요한 조례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임

- 다만, 어떤 조례가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만을 담고 있는 조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조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제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통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경기도의 경우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각 광역자치단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대상 조례 및 위원회 설치 여부>**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br>(제외조례) | 위원회 설치 여부 |
|---|---|---|---|---|
| 1 | 강원도 | 강원도 조례<br>입법평가 조례 |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외) | 입법평가위원회<br>(제5조) |
| 2 | 광주<br>광역시 | 광주광역시 조례<br>사후입법평가 조례 | 광주광역시 조례(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외) | 입법평가위원회<br>(제7조) |
| 3 | 대전광역시<br>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br>교육자치법규<br>입법평가 조례 | 교육자치법규<br>(1.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교육자치법규인 경우<br>2.제정되고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육자치법규인 경우<br>3.교육규칙(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은 제외한다)인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없음 |
| 4 | 대전<br>광역시 | 대전광역시 조례<br>입법평가 조례 | 대전광역시 조례<br>(1.기구정원・기관설치・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br>2.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 입법평가위원회<br>(제6조) |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br>(제외조례) | 위원회 설치 여부 |
|---|---|---|---|---|
| | | | 3.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br>4.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제외) | |
| 5 |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 교육청 소관 조례<br>(1.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br>2.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br>3.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br>4.입법평가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외) | 입법평가위원회<br>(제8조) |
| 6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시의 조례<br>(1.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br>2.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br>3.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외) | 입법평가위원회<br>(제8조) |
| 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울산광역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울산광역시의회<br>입법평가위원회<br>(제3조) |
| 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등 조직·인사 또는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입법평가위원회<br>(제4조) |
| 9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br>(1.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br>2.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외) | 입법평가위원회<br>(제5조) |
| 10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 3년마다 사후 입법평가 실시<br>(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br>2.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br>3.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br>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외) | 전라남도의회<br>입법평가위원회<br>(제8조) |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br>(제외조례) | 위원회 설치 여부 |
|---|---|---|---|---|
| 11 | 전라남도 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2년마다 사후 입법평가 실시<br>(1. 기관설치·기관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례<br>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br>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외) | 입법평가위원회<br>(제7조) |
| 12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br>(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br>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br>입법평가위원회<br>(제5조) |
| 13 | 경기도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외)<br>사후 입법영향분석: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제6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br>(기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 ·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회<br>입법정책위원회<br>(제6조) |
| 14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br>(1. 기관설치·기관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례<br>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br>3.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입법평가 시 보완사항이 없었거나 입법평가 결과를 개선·반영한 조례로 한정한다) 제외) | 인천광역시교육청<br>조례 사후<br>입법평가위원회<br>(제7조) |

- 집행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경우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기는 광주광역시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부산광역시의 경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집행부의 경우 1회적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위원회 구성 정수가 통상 15인에서 20인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원회에서 사후 입법평가 전부를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경우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입법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4.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여부

○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조례상에서 조례 입법평가 지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가 여부, 각 조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통보 및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평가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를 들고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회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분석지표 규정 및 평가기준 비교>**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지표운영 여부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여부 |
|---|---|---|---|---|---|
| 1 | 강원도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위원회에서 설정 | (제4조제1항각 호)<br>1.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br>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br>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br>5.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여부 | 결과 통보 받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제10조제3항) |
| 2 | 광주 광역시 | 광주 광역시 조례 사후입법 평가 조례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규정 | (제5조제1항)<br>1. 입법목적의 실현성<br>2. 비용과 편익예측 등의 적정성<br>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br>4.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 |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지표운영 여부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여부 |
|---|---|---|---|---|---|
| | | | |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br>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br>7.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 여야 함 |
| 3 | 대전 광역시 교육청 | 대전 광역시 교육청 교육자치 법규 입법평가 조례 | 없음 | (제6조)<br>1. 교육자치 법규 존속에 관한 사항<br>2. 입법목적 실현가능성에 관한 사항<br>3. 예산 및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br>4. 교육자치법규 집행에 관한 사항<br>5. 상위법령 및 다른 교육자치법규와의 체계에 관한 사항<br>6. 그 밖에 입법목적에 부합한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결과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을 권고<br>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
| 4 | 대전 광역시 | 대전 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규정 없음 | (제6조)<br>1. 입법목적의 실현성<br>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br>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br>5.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br>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여부 |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5 | 부산 광역시 교육청 | 부산 광역시 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 규정 없음 | (제6조제1항)<br>1. 입법목적의 실현성<br>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br>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br>5.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br>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지표운영 여부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여부 |
|---|---|---|---|---|---|
| 6 | 부산 광역시 | 부산 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규정 없음 | (제6조제1항)<br>1. 입법목적의 실현성<br>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br>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br>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br>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7 | 울산 광역시 | 울산 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별표의 “입법평가 기본자료”의 형식에 지표 포함 | (제7조)<br>1. 입법목적의 실현성<br>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br>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br>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br>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8 | 제주 특별 자치도 | 제주특별 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별표에서 규정 | 입법평가 분석지표 |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
| 9 | 충청 남도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별표에서 규정 | (제4조제1항)<br>1.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br>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br>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br>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br>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여부 |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함<br>해당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지표운영 여부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여부 |
|---|---|---|---|---|---|
| 10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 | (제5조제1항)<br>1. 입법 목적의 실현성<br>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br>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br>5.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br>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br>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
| 11 | 전라남도 교육청 |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함 | (제5조제1항)<br>1. 입법 목적의 실현성<br>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br>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br>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br>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br>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조례 제10조) |
| 12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별표) | (제4조제1항)<br>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br>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br>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br>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br>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입법평가 결과를 시장,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제10조) |

| 연번 | 지자체명 | 조례명 | 지표운영 여부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여부 |
|---|---|---|---|---|---|
| 13 | 경기도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 조례 | 별표에서 규정 | 별표에서 기준 제시하고 있음 |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14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 | (제5조제1항)<br>1. 입법 목적의 실현성<br>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br>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br>4.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br>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br>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br>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회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제17조) |

-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 혹은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에 대한 개선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 광역자치단체의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살펴본 바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성과 및 개선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Ⅳ.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필요성 검토

○ 2021년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었음. 이후 개정 사항은 아직 없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정을 계기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기획하여 2022년 수행함.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별표에서 입법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조례 입법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개정의견은 없음. 금번 연구용역 이후 입법평가 수행 방식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자체 입법평가를 위한 인력 충원 등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별도로 제언하기로 함

# 제 5 장 개별 조례 정비 사례

## Ⅰ. 자치법규정비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개관

○ 총 14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4개 분야로 나누어 현행 조례를 정비의견을 제시함. 분야별 대상 조례 수 및 정비 관련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 4개 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설치된 위원회를 기준으로 한 분류임

○ 정비 현황 총괄표

| 정비항목 / 위원회(조례총계) | | 일반정비 | 개정권고 | 통합권고 | 폐지권고 | 기타 | 기타 (현행유지) | 정비필요 |
|---|---|---|---|---|---|---|---|---|
| 의 회 운 영 | (3) | 3 | 1 | - | - | - | - | 4 |
| 행 정 복 지 | (79) | 39 | 6 | 1 | 1 | 1 | 37 | 48 |
| 산 업 건 설 | (43) | 26 | 5 | 1 | 1 | 1 | 14 | 34 |
| 교 육 안 전 | (23) | 6 | 5 | - | 1 | 1 | 11 | 13 |
| 계 | (148) | 74 | 17 | 2 | 3 | 3 | 62 | 99 |

*정비가 필요한 조례 현황은 중복을 포함하고 있음

○ 일반정비 사례

- 일반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포함하고 있음

- 보고 대상 조례 전체 148건 중 74건의 조례에서 일반정비 필요 사항이 나타남

- 61건의 조례는 일반정비만 필요함

- 목적조항 약칭사용, 법령 제명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 조항 오기, 조례를 주체로 구성한 문장 정비, 상위법령 개정 시 인용조항의 위치이동으로 조항 변경된 사항 미반영 등이 일반정비에 해당함

- 일반정비만 필요한 조례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연번 | 조례명 | 위원회 |
|---|---|---|
| 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의회운영 |
| 2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회운영 |
| 3 |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 행정복지 |
| 4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5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6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 7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8 |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9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10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행정복지 |
| 11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행정복지 |
| 12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행정복지 |
| 13 |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 14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15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16 |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17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18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 19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 20 |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 21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22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행정복지 |
| 23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24 |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 행정복지 |
| 25 |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행정복지 |
| 26 |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27 |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28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29 |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 30 |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31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행정복지 |
| 32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행정복지 |
| 33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 34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 행정복지 |
| 35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 36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산업건설 |
| 37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산업건설 |
| 38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 | |
|---|---|---|
| 39 |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40 |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산업건설 |
| 41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42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43 | 세종특별자치시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 산업건설 |
| 44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산업건설 |
| 45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46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47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48 |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49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산업건설 |
| 50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산업건설 |
| 51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52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53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산업건설 |
| 54 |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55 |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56 |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 5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 5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교육안전 |
| 59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 60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 61 | 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 교육안전 |

○ 개정권고 사례

- 개정권고 사례는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이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을 제시한 경우 등이 해당함

- 보고 대상 조례 전체 148건 중 17건에 대해서 개정 권고를 하였으며,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 연번 | 분류 | 연번(위원회별) | 조례명 | 상임위 | 조례 유형(위임/자치) | 개선방안 | 비고 |
|---|---|---|---|---|---|---|---|
| 1 | 1 | 0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회운영 | 자치 | 개정권고 |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의회 사무처장에게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정활동의 성격과 운영 현실에도 맞지 않아 이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 | 2 | 021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권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20년 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었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상 “인터넷 중독”정의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의해도 무방 |
| 3 | 2 | 034 |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권고 | 위임하고 있는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3조 제2항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용어는 법령의 용어 그대로 사용하면서 물품출납공무원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4 | 2 | 043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권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시 여건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검토 |
| 5 | 2 | 050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권고 | 위탁취소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위탁취소가 필요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제6조) |
| 6 | 2 | 055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권고 | 조례 적용대상자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 약칭을 배제 |
| 7 | 2 | 071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권고 |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이용권”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이를 반복해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 8 | 3 | 007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개정권고 | - 해촉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처럼 하나의 사유로만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질 병 등으로 수정하여 여러 여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 9 | 3 | 008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개정권고 | - 이 조례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종합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계획은 전국 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여성기업에 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을 별도 포함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계획과 별 |

| | | | | | | | |
|---|---|---|---|---|---|---|---|
| | | | | | | | 도로 매년 수립·시행되고 있음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일차적 판단은 집행부가 할 것)<br>따라서 조례 제5조는 별도의 여성기업 활동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임<br>또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br>(※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일차적 판단은 집행부가 할 것) |
| 10 | 3 | 009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개정권고 | - 조례 제4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수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br>-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기능이 불명확하여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11 | 3 | 010 |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개정권고 |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 12 | 3 | 012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개정권고 | [중장기 검토] 담당부서는 분석수수료 납부방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한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전자결제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결제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13 | 4 | 002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개정권고 | 경기도교육청 조례와 같이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 도입 검토 필요. 이를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노력 의무 부과 |
| 14 | 4 | 005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개정권고 |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의 기능에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함<br>(※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일차적 판단은 집행부가 할 것) |

| | | | | | | | |
|---|---|---|---|---|---|---|---|
| 15 | 4 | 009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교육 안전 | 위임 | 개정 권고 |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장애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16 | 4 | 011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교육 안전 | 위임 | 개정 권고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을 변경 반영<br>-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보관자 변경 반영<br>* 총무업무 담당사무관→ 운영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해당 기관의 총무부장(과장)→ 운영(행정)부장(과장) |
| 17 | 4 | 017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관리 조례 | 교육 안전 | 자치 | 개정 권고 |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을 별표1에 따른다”에서 별표1의 비품과 소모품 구분 기준 금액을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 통합권고 사례

- 통합권고는 유사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조례임

- 대상 조례 148건 중 2건에 대해서 통합 권고를 함

| 연번 | 분류 | 연번 (위원회별) | 조례명 | 상임위 | 조례 유형 (위임/자치) | 개선방안 | 비고 (통합 사유) |
|---|---|---|---|---|---|---|---|
| 1 | 2 | 052 |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행정 복지 | 자치 | 통합권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담당부서(복지정책과)에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규 조례 제정 후 본 조례를 폐지, 흡수하는 것을 검토 |
| 2 | 3 | 004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산업 건설 | 자치 | 통합권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근거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조례 수혜자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청년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실태조사, 취업지원 등 내용도 유사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 폐지권고 사례

- 폐지권고는 상위법령 개정, 폐지,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인하여 조례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조례를 의미함

- 대상 조례 148건 중 3건에 대하여 폐지 권고

- 폐지 권고 사례 목록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분류 | 연번 (위원회별) | 조례명 | 상임위 | 조례 유형 (위임/자치) | 개선 방안 | 비고 (사유) |
|---|---|---|---|---|---|---|---|
| 1 | 2 | 009 |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폐지 권고 | 시 출범 당시 제정된 이후 사실상 해당 조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 폐지 권고 |
| 2 | 3 | 006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폐지 권고 | 해당 조례는 전담조직 설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 조례 운영 실적 전무. 기업유치 관련「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01. 07 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2013. 07. 10 제정하여 포괄적으로 운영 중으로 해당 조례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 검토 |
| 3 | 4 | 001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폐지 권고 | 향후 운영상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유지하였지만, 현재까지 세종교육대상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수상자 적격성, 상금 형평성, 민간인 및 교원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이 존재하여 중복된 성격의 포상일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폐지 검토 |

○ 기타 사례

- 현행유지, 계획수립 권고, 폐지된 조례 등이 해당함. 현행유지는 62건, 폐지된 조례는 2건 , 계획수립 권고 1건임

- 현행유지 조례 목록 62건은 아래와 같음

| 연번 | 분류 | 연번 (위원회별) | 조례명 | 상임위 | 조례 유형 (위임/자치) | 개선 방안 | 비고 (사유) |
|---|---|---|---|---|---|---|---|
| 1 | 2 | 001 |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 | 2 | 003 |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3 | 2 | 007 |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4 | 2 | 010 |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설치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5 | 2 | 011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6 | 2 | 012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7 | 2 | 013 |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8 | 2 | 017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9 | 2 | 018 |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0 | 2 | 019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1 | 2 | 020 |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12 | 2 | 024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3 | 2 | 025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 | | | | | | |
|---|---|---|---|---|---|---|---|
| 14 | 2 | 026 |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5 | 2 | 027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6 | 2 | 028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7 | 2 | 030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8 | 2 | 031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19 | 2 | 032 |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0 | 2 | 033 |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1 | 2 | 03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2 | 2 | 036 |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23 | 2 | 037 |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24 | 2 | 038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5 | 2 | 039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6 | 2 | 051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 | | | | | | |
|---|---|---|---|---|---|---|---|
| 27 | 2 | 05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8 | 2 | 062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29 | 2 | 063 |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30 | 2 | 064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31 | 2 | 069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32 | 2 | 070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33 | 2 | 072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34 | 2 | 073 | 세종특별자치시 향교 · 서원 · 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35 | 2 | 075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36 | 2 | 076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37 | 2 | 077 |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38 | 3 | 002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39 | 3 | 003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 | | | | | | |
|---|---|---|---|---|---|---|---|
| 40 | 3 | 022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41 | 3 | 023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42 | 3 | 025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43 | 3 | 026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44 | 3 | 029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45 | 3 | 030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46 | 3 | 032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47 | 3 | 035 |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48 | 3 | 037 |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49 | 3 | 039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50 | 3 | 040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51 | 3 | 043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 | | | | | | |
|---|---|---|---|---|---|---|---|
| 52 | 4 | 003 |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53 | 4 | 006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54 | 4 | 008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55 | 4 | 010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56 | 4 | 014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57 | 4 | 015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58 | 4 | 016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59 | 4 | 018 |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현행유지 |
| 60 | 4 | 020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61 | 4 | 021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62 | 4 | 023 |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현행유지 |

- 계획수립 권고 조례는 1건이며 목록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분류 | 연번(위원회별) | 조례명 | 상임위 | 조례 유형(위임/자치) | 개선방안 | 비고 (사유) |
|---|---|---|---|---|---|---|---|
| 1 | 2 | 048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조례의 취지에 맞는 기본계획이 필요 |

- 폐지된 조례는 2건이며 목록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분류 | 연번(위원회별) | 조례명 | 상임위 | 조례 유형(위임/자치) | 개선방안 | 비고 (사유) |
|---|---|---|---|---|---|---|---|
| 1 | 3 | 034 |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이 조례는 2022.4.20. 폐지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됨 |
| 2 | 4 | 012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이 조례는 2022.7.18. 폐지되었음 |

# Ⅱ.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사례

## 1. 상위법 인용 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조례 규정에 상위법 인용 조문의 오류가 발생하여 위임의 근거가 불명확하게 됨

○ 이와 같은 오류를 정비하여 위임의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함

(예시 1)「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br>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br>(이상 생략)<br>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br>(이하 생략) |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br>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br>(이상 생략)<br>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br>(이하 생략) |

(예시 2)「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이상 생략)<br>6. “정보통신망”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이상 생략)<br>6. “정보통신망”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

(예시 3)「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이상 생략)<br>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이상 생략)<br>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2. 비문, 오탈자 정비

○ 조례에 나타난 비문,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함

(예시 1)「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9조(위탁) ①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추진과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제9조(위탁) ①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이하 생략) |

- 「추진과 관한」은 「추진에 관한」의 오기로 보임

(예시 2)「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상 생략)<br>2. '우호협력'은 제1호에 의한 교류협력를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관계를 말하며, 양 지역의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및 교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상 생략)<br>2. '우호협력'은 제1호에 의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관계를 말하며, 양 지역의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및 교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예시 3)「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3. 약칭 방식 등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방식을 자치법규입안기준에 적합하게 수정

(예시 1)「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 등'이라 한다)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 ① 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등 체결에 관해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br>(이하 생략) |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 ①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등 체결에 관해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br>(이하 생략) |

- 목적 조항에서 약칭 지양

○ 용어정비: 용어의 통일성 확보

(예시 1) **조문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 통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9조(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등) ① (생 략)<br>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현직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할 경우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br>③ (생 략) | 제9조(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등) ① (생 략)<br>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현직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선정할 경우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br>③ (생 략) |

○ 목적조항 정비: 상위법령상 책무규정 등에 근거한 조례로 실질적 성격이 자치조례인 경우

(예시 1)「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Ⅲ. 동일 규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조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통일성 확보 검토

- **보궐위원의 임기를 특별히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면 삭제**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

(예시 1)「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 |

(예시 2)「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9조(보궐위원의 임기) 위원회, 실무분과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제> |

# Ⅳ. 상위법령 관련 정비 사례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시 1)「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br>③ 위원회는「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br>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

| |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예시 2)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br>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br>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5조(지원 대상자) ① (생 략)<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 | 제5조(지원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br>② ---------- 관해서는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외하는 자에 관해서는「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제9조제3항 중 “기본직접지불금“----------. |
| 제5조의2(지원대상 농지)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직접 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br>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예외로 한다.<br>2.·3. (생 략) | 제5조의2(지원대상 농지) ----------. ----------. ----------.<br>1.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br>2.·3. (현행과 같음) |
| 제6조(지원 신청) ① ~ ③ (생 략)<br>④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 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사례

○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으로 중·장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운영이 없는 경우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비상설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위원회 임기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원회 비상설화와 연계하여 임기 관련 규정을 삭제를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제 6 장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입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1. 조례정비 기준 정립 및 교육

○ 세종특별자치시에 특화된 기준 정립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심사기준” 등으로 책자화하고 신규로 조례 입법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조례 입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입안기준에 대한 교육

-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조례 입법 지원인력의 입법지원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품질의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2. 조례정비 백서 발간

○ 연도별 조례정비 백서 발간

- 연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oooo년 조례 정비 백서」발간을 추진할 수 있음

- 연간 제·개정된 중요한 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조례정비의 성과를 축적함

○ 조례정비 백서 발간의 효과

- 조례정비 백서의 발간을 통하여 연간 의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백서의 발간은 성과를 보다 분명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됨

- 해마다 백서가 발간되면 연차가 지나고 나면 백서 자체가 조례 정비의 연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입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3. 조례 성과 및 계획 관련 의회 보고 의무화

○ 조례 성과 및 계획 관련 의회 보고 의무화

- 시민 복리증진, 시민 편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원, 육성 조례의 경우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지원, 육성 조례 및 대규모 예산 수반이 예측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원, 육성의 성과를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수반 조례의 운영성과를 균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됨

## 4. 입법평가 결과 축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 조례 입법평가와 지방의정활동의 관계

-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의 숙의 및 입법 이후의 영향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가 축적되고 평가 방법의 개량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례의 영향이나 효과를 예측하는 일도 훨씬 수월해 질 것임
- 나아가 축적된 평가결과는 지자체의 자치입법의 “자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입법평가 결과의 축적

-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를 축적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지표에 대한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입법평가가 계속 될 수 있고, 조례 입법평가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하여 평가를 개량화하고 평가결과를 축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입법평가 전담인력 확충

-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여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에 수반하는 예산 및 인력에 관련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이 반영된 조례에 대한 이해를 갖춘 법제·정책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교육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가 계속 수행되고 결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의 협업이 필요함

-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목록

| 연번 | 조례명 | 상임위 | 조례 유형 | 개선방안 |
|---|---|---|---|---|
| 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회운영 | 자치 | 일반/개정 |
| 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의회운영 | 자치 | 일반 정비 |
| 3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회운영 | 위임 | 일반 정비 |
| 4 |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5 | 세종특별자치시시보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6 |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7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8 | 세종특별자치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등에 관한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9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10 |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11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12 |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폐지 |
| 13 |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설치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14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15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16 |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17 |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18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19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20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21 |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 | | | |
|---|---|---|---|---|
| 22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23 |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24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개정 |
| 25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26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27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28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29 |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0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1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2 |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33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5 |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6 |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7 |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개정 |
| 38 | 세종특별자치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39 |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40 |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41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42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43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44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 | | | |
|---|---|---|---|---|
| 45 |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46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 |
| 47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48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49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50 |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51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기타(계획수립권고) |
| 52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53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개정 |
| 54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55 |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통합 |
| 56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57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58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개정 |
| 59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60 |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61 |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62 |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63 |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64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65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 | | | |
|---|---|---|---|---|
| 66 |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67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68 |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69 |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70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71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72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73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74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개정 |
| 75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76 |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77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78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79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기타 |
| 80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기타 |
| 81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 행정복지 | 자치 | 일반 정비 |
| 82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복지 | 위임 | 일반 정비 |
| 83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84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85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86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통합 |
| 87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 | | | |
|---|---|---|---|---|
| 88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폐지 |
| 89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개정 |
| 90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개정 |
| 91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개정 |
| 92 |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개정 |
| 93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94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개정 |
| 95 |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96 |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97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98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99 | 세종특별자치시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100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01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02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103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104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 105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 106 |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07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 | | | |
|---|---|---|---|---|
| 108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109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10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11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 112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113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14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115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16 |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조례 폐지) |
| 117 |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118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119 |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120 |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일반 정비 |
| 121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 122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위임 | 기타 |
| 123 |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124 |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일반 정비 |
| 125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 산업건설 | 자치 | 기타 |
| 12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폐지 |
| 1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개정 |
| 128 |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 12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일반 정비 |

| | | | | |
|---|---|---|---|---|
| 13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개정 |
| 13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 13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일반 정비 |
| 13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 13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개정 |
| 13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 13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일반/개정 |
| 137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조례 폐지) |
| 138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일반 정비 |
| 13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 14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 14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 14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개정 |
| 143 |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교육안전 | 자치 | 기타 |
| 144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일반 정비 |
| 145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 146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
| 147 | 세종특별자치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일반 정비 |
| 148 |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 교육안전 | 위임 | 기타 |